|  |  |  |
| --- | --- | --- |
| **2011년 희토류 수출 쿼터 신고조건과 신고 순서의 공고**공고 2010년 제 77호희토류 수출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수출경영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 희토류수출 쿼터 신고조건 및 신고순서》를 공포한다.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2010년 10월 10일**2011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조건과** **신고순서****1.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 조건**2010년 희토류 수출쿼터를 이미 획득한 기업은 아래 표준신청에 따라 2011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신청한다.(1) 생산기업ㄱ.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등록을 거쳐 수출입경영자격 또는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등기를 처리하고 독립 법인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2005년 이후 등기등록된 기업은 반드시 국가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한다.ㄴ. 희토류 산업규획, 산업정책 및 희토산업관리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제품 품질이 현행 국가표준에 도달해야 하는 동시에 ISO9000품질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ㄷ. 생산기업의 희토류 원자재가 국토자원부가 공고한 채굴자격을 갖고 있는 희토류 개발채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ㄹ. 생산규모에 상응하는 환경정비 시설(온라인 감독제어시설 포함)을 보유하고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표준에 부합하며, 성급이상의 환경보호부문의 증명을 거쳐 2009년과 2010년 오염물 처리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납부하고 환경위법행위가 없으며 환경 응급 예비방안 및 세트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ㅁ. 국가 토지관리부문의 관련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ㅂ.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공상, 생육 등 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며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사회보험비 납부와 관련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ㅅ. 국가 관련 법률 법규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2) 유통기업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부문에 등기등록되고 수출입경영자격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 처리를 했으며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ㄴ. 수출 제품은 이상의 생산기업 표준 1,2,3,4,5,6,7 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으로부터 공수한 것이면서, 해당 자원기업이 표준에 부합하는 관련 재료 및 관련 증치세 영수증과 공급기업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ㄷ.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공상, 생육 등 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며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사회보험비 납부와 관련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ㄹ. ISO9000 품질체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ㅁ.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3) 기업 경영 집중도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등기 등록된 기업이 소속 또는 관련 기업간의 희토류 수출실적을 합병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4) 희토류 수출을 진일보 규범화 하기 위하여 국가는 희토류 수출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당해년도에 쿼터 집행과정 중 각 종 위법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 산업 또는 자원환경보호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기업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년도 희토류 수출 쿼터를 회수, 일시 정지 하거나 당해년도 수출쿼터 수령을 취소한다.**2. 신고 및 심사순서**각지의 희토류 수출기업은 반드시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문(이하 지방상무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상기 희토류 수출 쿼터신고조건에 근거하여 현지에서 희토류 수출쿼터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자격초심을 진행하고 2010년 11월 24일 이전에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 명단, 서면초심의견을 상급 상무부(대외무역사, 기업 관련자료 전자판 첨부로 바로 가능)에 보고하고, 동시에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에 사본을 제출(기업 관련자료 인쇄본 및 종합통계표 전자판을 첨부-첨부표 참조) 한다.중앙관리기업은 직접 신청 및 관련자료를 상무부(대외무역사, 기업 관련자료 전자판 첨부로 바로 가능)에 보고하고, 동시에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에 사본(기업 관련자료 인쇄판 및 전자판을 첨부)을 제출한다.상무부의 위탁을 받아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는 수출쿼터를 신청한 기업의 조건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하고 종합 건의를 제출하여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상무부(대외합작사)에 보고한다.상무부는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의 재심리 의견에 근거하여 수출쿼터 신고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시에 이견이 없으면, 계산공식에 근거하여 쿼터를 분배하고 이를 대외로 공포한다.**3. 관련 신고자료**희토류 수출쿼터 신고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할 시,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자료는 모두 신청기업 법정대표인의 서명확인이 있어야 한다.(1) 신청기업 법인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비안등기에 서명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신청기업 세관코드와 기업 코드. 생산기업은 국가 희토류 산업 주관부문이 증명한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 제공(2) 성급이상 환경부문이 발급한 환경법 준수 증명문건, 환경행정처벌증명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오염 배출비를 법에 근거하여 적시에 납부했음을 증명하고, 환경평가 “삼동시(三同时)” 증명을 집행하며, 주요 오염물이 배출표준 부합 증명1. ISO 9000품질인증증서

(4) 생산기업은 2009년의 관련 증빙 또는 송장을 제공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수출업무까지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증명 또는 세무장이 날인된 기업 감저퇴(감세, 저세, 퇴세)신청표 원본, 수출 세관신고서(복사본)과 수출 핵소신고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대리수출하는 경우, 수출입영수증 원본, 수출세관신고서(사본), 수출 핵소신고서(사본)과 대리수출화물증명(사본)을 제출한다.생산기업이 직접 희토류 개발채굴기업에서 구매한 광물 제품의 경우, 희토류 개발채굴 기업은 반드시 국토자원부문이 공고를 통해 희토류 개발채굴 합격기업으로 생산기업은 희토류 원자재의 원산지 광산기업 명단, 채취수량 및 이에 상응하는 증치세 영수증과 광물생산기업 증명을 제출한다.(5) 유통기업은 관련 증빙을 제출: 증치세 영수증 원본 또는 수출전용 영수증 원본, 수출세관신고서(사본), 수출핵소신고서(사본)과 세무부문이 발급한 대리수출화물 증명(사본)(6) 생산기업은 국가토지관리부문이 비준한 용지의 유효법률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7)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양로, 실업, 의료, 공상과 생육 등 각 사회보험 가입 및 각 사회보험비용의 적시 납부 관련 증명(8) 모든 기업은 2009년도의 상기 자료를 제출한다. 생산기업은 2009-2010년의 (2)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첨부: 2011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조건 재심리 표<http://wms.mofcom.gov.cn/accessory/201011/1289437292378.xls> |  | **关于2011年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和申报程序的公告**公告2010年第77号　　为进一步加强稀土出口管理，规范出口经营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的有关规定，现公布《2011年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和申报程序》。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二〇一〇年十一月十日 **2011年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和****申报程序****一、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　　已获得2010年稀土出口配额的企业按照下列标准申请2011年稀土出口配额：　　（一）生产企业。　　1.按国家有关规定经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注册、获得进出口经营资格或办理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具有独立法人资格；2005年以后登记注册的企业，必须通过国家主管部门核准。　　2、符合稀土行业规划、产业政策及稀土行业管理有关规定，产品质量达到现行国家标准，并取得ISO9000质量体系认证。　　3．生产企业的稀土原料须来自国土资源部公告的具有采矿资格的稀土开采企业。　　4．具有与生产规模相适应的环保治理设施（含在线监控设施），污染物排放达到国家或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经省级以上环保部门证明2009年和2010年排污费依法按时足额缴纳、无环境违法行为且制定了环境应急预案及配套设施健全。　　5．符合国家土地管理的相关政策规定。　　6．遵守国家相关法律法规和当地政府的有关规定，依法参加养老、失业、医疗、工伤、生育等各项社会保险并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并提供所在地劳动和社会保障部门出具的已按时足额缴纳各项社会保险费的相关证明。　　7．无违反国家有关法律、法规的行为。　　（二）流通企业。　　1.按国家有关规定经工商部门登记注册、获得进出口经营资格或办理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具有独立法人资格。　　2.出口产品须来自符合以上生产企业标准1、2、3、4、5、6、7款要求的企业，并提供其货源企业符合标准的有关材料及相关增值税发票和供货企业证明。　　3.遵守国家相关法律法规和当地政府的有关规定，依法参加养老、失业、医疗、工伤、生育等各项社会保险并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并提供所在地劳动和社会保障部门出具的已按时足额缴纳各项社会保险费的相关证明。　　4.取得ISO9000质量体系认证。　　5.无违反国家有关法律、法规的行为。　　（三）为提高企业经营集中度，减少出口企业数量，凡2007年1月1日以后注册登记的企业，其所属或关联企业间的稀土出口业绩合并将不予认定。　　（四）为进一步规范稀土出口，国家将对稀土出口企业实行严格监管。凡在当年配额执行过程中出现各类违法违规行为、不执行国家产业或资源环境保护政策的企业，一经核实，将收回其当年稀土出口配额、暂停直至取消其当年度出口配额申领资格。　**二、申报及审核程序**　　各地稀土出口企业应向所在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及计划单列市商务主管部门（以下简称地方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地方商务主管部门根据上述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对本地区申请稀土出口配额的企业进行资格初审，并于2010年11月24日前将本地区符合条件的出口企业名单、书面初审意见上报商务部（对外贸易司，附企业相关材料电子版即可），同时抄送中国五矿化工进出口商会（附企业相关材料纸质版及汇总统计表电子版，见附表）。　　中央管理企业直接将申请及有关材料报送商务部（对外贸易司，附企业相关材料电子版即可），同时抄送中国五矿化工进出口商会（附企业相关材料纸质版及电子版）。　　受商务部委托，中国五矿化工进出口商会对申请出口配额企业的条件进行复核，并提出汇总建议，于2010年12月1日前上报商务部（对外贸易司）。　　商务部根据中国五矿化工进出口商会的复核意见，对符合出口配额申报条件的企业进行审定，在商务部网站上公示无异议后，根据计算公式进行配额分配，一并对外发布。**三、相关报送材料**　　稀土出口配额申报企业提出申请时，应提交以下材料，所有上报材料均须由申请企业法人代表签字确认。　　（一）申请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复印件、加盖备案登记印章的《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或《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企业资格证书》、申请企业海关编码和企业代码。生产企业还须提供国家稀土行业主管部门证明其符合行业政策的相关材料。　　（二）省级以上环保部门出具的环境守法证明文件，包括无环境行政处罚证明、排污费依法按时足额缴纳证明、建设项目执行环评"三同时"证明、主要污染物达标排放证明（环境监测报告正本）。　　（三）ISO9000质量认证证书。　　（四）生产企业须提供2009年的相关凭证或单据：由生产企业自营出口的，须提供免抵税证明或加盖税务章的企业免抵退申请表原件、出口报关单（复印件）和出口核销单（复印件）；由出口企业收购出口的，须提供由国税局监制的增值税发票原件、出口报关单（复印件）和出口核销单（复印件）；由出口企业代理出口的，须提供出口发票原件、出口报关单（复印件）、出口核销单（复印件）和代理出口货物证明（复印件）。　　生产企业直接从稀土开采企业购买矿产品的，稀土开采企业应是经国土资源部公告的合格稀土开采企业，生产企业须提供稀土原料的来源矿山企业名单、采购数量及相应的增值税发票和矿源企业证明。　　（五）流通企业须提供的相关凭证：增值税发票原件或出口专用发票原件、出口报关单（复印件）、出口核销单（复印件）和税务部门出具的代理出口货物证明（复印件）。　　（六）生产企业须提供国家土地管理部门批准用地的有效法律证明文件。　　（七）所在地劳动和社会保障部门出具的已经参加缴纳养老、失业、医疗、工伤和生育等各项社会保险并及时足额缴纳各项社会保险费的相关证明。　　（八）所有企业只需提供2009年上述相关材料；生产企业还须提供（2009-2010年）符合（二）的相关材料。　　附表：2011年稀土出口配额申报条件复核表<http://wms.mofcom.gov.cn/accessory/201011/1289437292378.xls> |